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 변경 :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나.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9조)

- 인용 법령 명칭 변경
-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 명시
-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함

다. 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안 제2조)

- 당초 : 부시장 → 변경 : 지명업무 담당국장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를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 공무원

제2조제3항제2호 중 “자 중 3인”을 “사람 중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미시 지명위원회”
를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제3조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할구역내”를 “관
할구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명중”을 “지명 중”으로,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등”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 · 비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지명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지명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u>	<u>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2조(구성) ① 구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각 호의 사람 -----.
1. <u>관계공무원</u>	1. <u>관계 공무원</u>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
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
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
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
명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생 략)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2. -----
----- 사람 중 3명 --

3. 그 밖에 -----
----- 사람

④ -----
--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
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을 위원회-----
-----.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
----- 한다.

제4조(기능) ----- 각 호
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관할구역 내-----

3. 그 밖에 -----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 관할
구역 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련한 소속 읍면동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

② 제1항에 따라 -----

지명 중 -----

----- 포함한
다) 또는 국가기본도상-----
-----.

제6조(의견청취 등) -----

----- 관계 전문
가의 의견청취 등 -----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
-- 각 호-----
----- 작성 · 비치하여야 -

다. 1. ~ 4. (생략) 5. <u>기타</u> 중요한 사항 <u>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u> <u>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u> <u>규칙으로 정한다.</u>	ㄱ.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u>제9조(운영세칙) 관계법령 및 이</u> <u>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u> <u>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u> <u>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u> <u>정한다.</u>
--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 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 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관 실·과		도 시 .과
입 안 자	과 장	전 환 엽
	담 당	김 일 동
	담 당 자	최 정 철 (480-5429)